

광주지방법원 2024. 11. 15 선고 2024가단537124 판결 [건물명도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24. 11. 8.

판결 선고 2024. 11. 1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2층 114.67㎡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ㅁ, ㅂ, ㄴ의 각 점을
순차로 연결한 선내 ㉗부분 31.5㎡를 인도하고,
나. 1,32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7. 1.부터 2024. 8. 17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
값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다. 2024. 8. 17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33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
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1)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김한울

별지

1) 원고의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선택한다.